

(우)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국장 김기성(6574) 보험급여팀장 고영옥(6572) / 팀원 이승아(6560)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9992호

시행일자 2024. 12. 10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250호(2024. 12. 3.)

2. 상기 근거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을 고시했으며, 해당 고시에 주요 수가 변경 사항이 포함(\* 2025년 의원·병원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·조정 관련)되어 있어 많은 회원들이 진료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별도 공문 송부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아울러, 동 고시 일부개정안은 기존 고시 안내사항과 동일하게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도 게시(2024. 12. 4.)되어 있으므로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주요 개정사항

○ (의원) 초·재진 진찰료 인상

○ (병원)

- 수술·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·공휴 가산 확대
-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
-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

나. 시행일 : 2025. 1. 1.

#붙임 : 고시 제2024-250호 일부개정안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